

## 법원 심리 전에 협의하십시오

- 귀하 또는 증인이 원격으로(전화 또는 화상 회의) 법원에 출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빨리 법원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원격 출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www.courts.ca.gov/find-my-court.htm](http://www.courts.ca.gov/find-my-court.htm)를 이용해 귀하의 법원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법정 통역사:**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양식 INT-300](#)을 이용해 통역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서기에게 신청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이 양식을 이용해 증인을 위한 통역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보육시설:** 법원에서 오전이나 오후, 심지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므로 보육 시설을 확인하십시오. 일부 법원에는 부모가 법정에 있는 동안 자녀가 대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인 아동 대기실이 있습니다. 아동 대기실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미리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인력:** 귀하는 타인을 법정에 대동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대동한 사람은 귀하를 대리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사건이 호출될 때 귀하 옆에 착석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 화상 회의로 출석하는 경우 지원 인력도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 제공:** [양식 MC-410](#)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귀하의 현지 법원의 장애/ADA 조정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 요청



심리가 열리기 최소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보청 시스템, 컴퓨터 보조 실시간 자막 또는 수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신청서([양식 MC-410](#))**를 이용하려면, 서기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www.courts.ca.gov/forms.htm](http://www.courts.ca.gov/forms.htm)을 방문하십시오. (민법 제54.8조.)

## 법원 심리에 증거를 지참하거나 증인을 대동하십시오

증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정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지참하거나 증인을 대동하는 것은 선택이며 필수가 아닙니다. 귀하의 진술만으로도 귀하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판사가 믿게 해야 합니다. 판사는 양측의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 증거:** 증거에는 사진, 이메일, 상해를 보여주는 의료 기록, 경찰 보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 판사와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때로는 판사가 일정한 문서를 보거나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포함될 수 있는 문서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았다면 서증 사본 3부를 지참하십시오. 증거가 있고 심리일에 전화나 화상 회의로 출석하고 싶다면 현지 셀프 헬프 센터에 연락하여 증거를 판사 및 상대방과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 증인:** 귀하는 법원 심리에서 증인의 발언을 허용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많은 경우에는 법원 심리 전에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셀프 헬프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심리 요령

###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계획하십시오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계획하고 메모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심리를 위해 메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관한 법원 문서를 열람한 후, 그 외에 판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자신의 입장은 뒷받침하는 사실 관계와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십시오. 사건(혐의)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신청하고 무엇을 다투려는 것인지 파악하십시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판사에게 말하십시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생각하고 기록하십시오.

### 일찍 안전하게 출석하십시오

여유 있게 출석하거나 전화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법정 날짜 전에 Zoom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연습하십시오. 늦으면 사건 호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각할 것 같으면 즉시 법원에 전화하여 법정 직원에게 지각을 알리십시오.

- ▶ 직접 출석하는 경우 상대방과 가까이 앉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걸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두렵다면 법정 내에 있는 담당자에게 말하십시오.
- ▶ 화상 회의로 참석하는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현재 위치나 전화 번호(전화를 거는 경우)를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화상 회의로 안전하게 출석하는 방법에 관해 변호사와 이야기하십시오. 여기에는 가상 배경 사용하기 또는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전화하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에 연락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법정 규칙을 따르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 직접 출석하는 경우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 심리 중에 물 이외에는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 머리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판사에게 말할 때 판사를 “your honor(유어 아너)” 또는 “Judge(저지)”라고 부르십시오.
- 말하는 사람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 발언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판사에게 발언 기회를 원한다고 알리십시오.

## 저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판사는 양쪽 모두에게 발언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금지 명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발언할 것을 요청합니다. 누가 먼저 발언하는 양측 모두 발언 기회가 부여됩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말이 있지만 자신의 차례가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이 발언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판사에게 발언 허락을 요청하십시오.

### 판사는 귀하의 법원 심리 일정을 다시 잡거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 ▶ 판사가 귀하의 법정 날짜를 다시 잡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속행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 명령을 요청한 사람이 적시에(마감일까지)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 판사가 귀하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 금지 대상자가 답변서(양식 DV-120)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 요청하는 경우, 1차 법정 날짜에 요청한 경우라면 판사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판사가 귀하의 법정 날짜를 다시 잡는 경우, 판사는 일반적으로 임시 금지 명령(승인된 경우)을 연장합니다. 판사가 귀하의 법정 날짜를 다시 잡는 경우, 귀하에게 새로운 명령([양식 DV-116](#), 심리 속행 요청에 대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 금지 명령이 거부된 경우, 이는 판사가 학대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금지 명령 사건이 종료되고 모든 임시 보호 조치가 소멸합니다.

- ▶ 금지 명령이 승인되는 경우, 이는 판사가 학대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귀하는 금지 명령서를 검토하여 모든 명령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 관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 명령이 승인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가 법정에 출석하였고 판사가 장기 금지 명령을 승인한 경우, 귀하는 몇 가지 조치를 더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모든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이 금지 명령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호받는 사람:

- ① 귀하의 금지 명령은 양식 DV-130, 심리 후 금지 명령을 통해 내려집니다. 판사가 서명한 양식 DV-130이 없는 경우, 서기에게 양식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양식이 있다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다음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양식 DV-130](#)(필수).
- [양식 DV-140](#), 자녀 양육권 및 방문 명령(법원이 자녀를 위해 명령을 내린 경우 필수).
- [양식 FL-342](#), 자녀 양육비 정보 및 명령 첨부서류 또는 [양식 FL-343](#), 배우자, 동거인, 또는 가족 부양 명령 첨부서류(판사가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를 명령한 경우).

- ② 작성한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서기는 이를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하기 위해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서명이 행해진 후 귀하는 이 양식을 가져와야 합니다. 귀하의 양식이 언제 준비되는지 법원 서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양식의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귀하는 몇 부의 무료 사본을 받습니다.

- ③ 양식 DV-130을 읽고 판사가 해당 양식의 우편 송달을 명령했는지 아니면 직접 송달을 명령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식에 대해 우편 송달 명령을 받은 경우, 귀하의 송달인은 금지 명령의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직접 송달이 최선입니다. 법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특히 송달 받을 사람이 이사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사람이 실제로 사본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달에 관해서는 <https://selfhelp.courts.ca.gov/DV-restraining-order/serve-longterm-order>에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금지 대상자:

- ① 귀하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금지 명령은 양식 [DV-130](#), 심리 후 금지 명령을 통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지 품목(화기(총), 화기 부품, 탄약)이 있는 경우 모든 품목을 유면허 총기상이나 경찰에 가져와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양식 DV-800-INFO/JV-270-INFO](#), 화기, 화기 부품 및 탄약은 어떻게 제출, 매각 또는 보관합니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www.selfhelp.courts.ca.gov/respondto-DV-restraining-order/obey-firearms-orders](http://www.selfhelp.courts.ca.gov/respondto-DV-restraining-order/obey-firearms-orders))으로도 제공됩니다. 또한 지역 셀프 헬프 센터에서 무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현지 법원의 셀프 헬프 센터는 [www.courts.ca.gov/selfhelp](http://www.courts.ca.gov/selfhelp)에서 찾아보십시오.

## 상대방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귀하가 자녀 양육 또는 방문(양육 시간) 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판사는 귀하와 상대방이 양육 시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원 전문가와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중재”라고 합니다. 귀하는 귀하 사건의 상대방과 함께 만나지 않고 혼자 만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에게 이 요청을 하는 방법을 물어 보십시오. 중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selfhelp.courts.ca.gov/child-custody/what-to-expect-mediation](http://www.selfhelp.courts.ca.gov/child-custody/what-to-expect-mediation)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 귀하가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심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귀하에게 내려진 보호가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심리에 참석하고 귀하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귀하에게 변호사 비용 등에 관해 불리한 일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또 다시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새로운 양식 세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 금지 명령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셀프 헬프 직원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누군가가 귀하를 상대로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귀하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귀하의 입장을 듣지 않고 귀하에게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최대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과 귀하가 공유하는 자녀 또는 재산에 대한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에 관한 정보는

<https://selfhelp.courts.ca.gov/DV-restraining-order/process>.

## 셀프 헬프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귀하의 현지 법원의 셀프 헬프 센터는 [www.courts.ca.gov/selfhelp](http://www.courts.ca.gov/selfhelp)에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헬프 직원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서 귀하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도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은 무료로 개인 안전 요령을 제공합니다. 연중 무휴 10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www.thehotline.org](http://www.thehotline.org)를 방문하거나, 1-800-799-7233, 1-800-787-3224(TTY)으로 전화하십시오.